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신청 및 약정서

담당	담당결재

■대출자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한국 내 주소					
*핸드폰 번호		유선 전화번호		E mail	

※ 핸드폰번호, E mail 등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표시 항목은 필수기재 항목입니다.

■신청사유 (해당 사유에 V 표시 해주세요)

☐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 (※의사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 1항 제 2호 또는 제 3호에 따른 사유로 피보험자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제 2호 : 휴업, 폐업, 동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동법 제 20조 제 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피보험자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제 3호 : 상해 등으로 피보험자인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2.1. 이후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감편 등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출국기한유예 허가 통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내역

대출명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대출이율	고정 년 3% (대출금 상환 시 원리금 일시 상환)
신청금액	_____ 원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1년간
대출한도	이전 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 적립보험료 중 삼성화재 지분의 50% (동일한 사유로 인한 대출은 잔여한도에 관계없이 1회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원리금 (원금 + 이자) 은 대출기간만료일 전에 상환하여야 하며,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 대출기간만료일까지 미상환 시에는 출국만기보험금에서 원리금이 차감되어 자동 상환되며, 추후 보험금 지급 시 원리금이 차감된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 ※ 대출기간만료일 이전에 출국만기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출국, 체류자격변경, 사망 등) 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일에 대출기간이 종료되고,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 대출원리금이 차감됩니다.
- ※ 대출 신청 시 근로 중인 경우 대출 신청할 수 없으며,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령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	------	--	------	--

※ 한국내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신청 및 약정서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 대출금 수령 계좌 통장사본
- *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 (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 * 의사진단서 (4주 이상 요양으로 인한 신청 시)
- * 출국기한유예 허가 통지서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감편 등으로 인한 신청 시)

본인 (대출자) 은 위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이하 '회사'라 한다) 과 상기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청취 및 이해했으며, 본 약정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약정' 및 '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약)'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각 조항을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약정서를 확인 후, 자필서명 하신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약정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대출자)

(인)

자필
확인

이자계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단 윤년은 1년을 366일로 봄)
이자납부	년 고정 3%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부리하며 대출금 상환 시 원금과 함께 납입합니다.
대출실행	대출개시일에 신청금액 전액 실행
상환방법	대출기간 내 원리금 일시상환 ※ 미상환 시, 출국만기보험금에서 원리금이 차감되어 자동 상환 처리 됩니다

■제 1조 정의

1.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피보험자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계약의 적립보험료 (납입보험료) 중 삼성화재 지분의 5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금'은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말 합니다.
3.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대상계약'이라 함은 본 건 금전차용 계약의 기본이 되는 회사와의 계약을 말하며,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계약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2조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기간 및 원리금 상환

- 1 출국만기보험의 담보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상환기간 내에 언제든지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2 대출기간 내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해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3 출국만기보험 원리금은 대출기간만료일 내 상환하여야 하며, 미 상환 시, 출국만기보험금에서 차감되어 자동상환됩니다. 단,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에 출국만기보험의 지급사유 (출국 체류자격 변경 사망 등)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일에 대출기간이 종료되고,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 대출원리금이 차감됩니다.

■제 3조 담보대출 이자율 및 원리금상환 방법

- 1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고정 년 3% (*사업장 변경으로 계속 적립 시 적립이율 (1.5%) + 1.5%)로 하며,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기간 중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 자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변동이 자율을 적용합니다.
- 2 원리금상환 방법은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계약에 의해서 회사와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 간에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제 4조 기한이익의 상실 및 해지

-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사로부터 독촉이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는 즉시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의 변제 이행이 없는 경우,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원리금에 충당합니다.
- ① 회사의 동의없이 위 지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②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파산 부도 처분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국세채납 또는 임금채불 등 회사의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

■제 5조 지급 시 우선변제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대상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제지급금 (환급금, 보험금 분할보험금 연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대상계약의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나 보험수익자 등에게 지급할 제지급금에서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나 보험수익자 등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6조 보험계약의 소멸

상환기일 전에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소멸일로 상환기일에 도달한 것으로 하여 회사가 지급할 금액 (보험금 및 제지급금)에서 대출이자 및 원금의 순으로 공제합니다.

■제 7조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회사는 상환기일전이라도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금 및 이자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우선상환 및 질권설정통지

- 1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는 대출원리금의 우선상환을 위하여 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 계약의 보험금 및 지급금 중 출국만기보험담보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질권설정을 본 증서로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 동 질권설정은 종료됩니다.
- 2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는 제 1항의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를 회사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9조 준용규칙

-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삼성화재 '여신거래 기본약관 (가계용)'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 2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약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10조 약관변경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가 1개월동안 게시 하거나 통지에 의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며, 이 기간 안에 서면에 의한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 및 대출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필수] 개인 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상세동의서[여신금융거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귀중

귀사와의 여신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 신용 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의무 이행
-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 ·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금융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 해당 (금융 거래계약 종료일 ,귀하가 신청한 (금융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 '을 말합니다 .
※ (금융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 ·이용됩니다 .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 신용 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 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수집 ·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u>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 (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거주정보 ,동거가족 ,직장 /직업정보 (직장명 ,직장주소 ,부서명 ,직위 ,고용형태 ,입사년월일 ,업종 ,사업자번호) ,본인확인정보 (I,D I) ·신용거래정보 : 대출 (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 체크 카드 ,당좌 (가계당좌)예금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내역 ,거래일시 ,금융거래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신용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 : 소유부동산정보 ,임대차계약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공공정보 등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 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건강보험료납부액 ,국민연금납부액 ,신용평점 ,평점정보 등 이와 유사한 정보 위 <u>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u>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2.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 KCE평가정보(주)
 -국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산출기관, 법무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법령상 업무수행기관 (위탁사업자 포함)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본인의 신용을 확인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국가기관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위탁업무 포함)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 신용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주소,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거주정보, 동거가족, 직장/직업정보 (직장명, 직장주소, 부서명, 직위, 고용형태, 입사년월일, 업종, 사업자번호) ·신용거래정보 : 대출 (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 체크 카드, 당좌 (가계당좌) 예금,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내역, 거래일시, 금융거래 상대방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신용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능력정보 : 소유부동산정보, 임대차계약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공공정보 등 :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 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건강보험료납부액, 국민연금납부액, 신용평점, 평점정보 등 이와 유사한 정보 위 <u>개인신용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개인 (신용)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회 ·제공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대출신청자	(인)	담보제공자	(인)
-------	-----	-------	-----

여신거래 기본약관 가계용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 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회사와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주택자금,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모든 가계용 여신거래에 적용됩니다.

제 2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① 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 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자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 2항 제 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절한 시일 내에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④ 제 2항 제 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인상, 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⑤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⑦ 제 4항, 제 5항 및 제 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여신취급 창구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⑧ 제 3항 및 제 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 배상금을 등을 적용합니다.
- ⑨ 제 1항 및 제 2항 제 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3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존 해지포함 계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대한 독촉 및 통지 비용

- ②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 짜수만큼, 상법 제 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분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대출약정의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일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3조의 2 (대출계약의 철회)

- ①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한다)이 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보험계약대출(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유 동화 대상 대출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 ③ 제 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 9조 제 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세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 ④ 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 ⑤ 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 4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5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회사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제 6조 (기한전의 임의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제예치금 (채무자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 (제 1호의 제예치금,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5. 도파,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② 아래 각 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당해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기한이익상실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 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그 한 채무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않거나 제 2항 또는 제 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 1항 제 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 4조, 제 16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을 양도, 변경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회사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 1항 또는 제 3항 제 2호와 제 3호에 해당되어 회사가 보증인의 교체를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 교체에 응하지 아니한 때
- ⑤ 제 1항 내지 제 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합니다.

제 7조의 2 (보험계약자에 대한 우대)

회사는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 약정에 따라 자율, 담보 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제 7조 제 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제 1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 2호내지 제 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를 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 7조 제 3항과 제 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 7조 제 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 9조 (회사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 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경우, 회사는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제예치금, 기타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 (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합니다.)을 상계할 경우, 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 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 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예치금 등의 이율은 회사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제 10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채권의 증서 등은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② 제 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 채무의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1조 (일부변제, 일부상계와 중단)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 9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채권보정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채무자가 제 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⑤ 제 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으로 회사의 채권보정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의사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 3항에 준하여 채권 보정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사고의 처리)

- ① 채무자 회사에 제출한 증서, 기타의 서류가 불가항력,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된 후 갚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 1항의 분실, 손상, 멸실의 경우에 회사에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나 기타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 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 1항 제 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④ 회사가 증서, 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 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 또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 13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4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5조 (통지의 효력)

- ①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회사가 서명통지 또는 기타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 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명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도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한 사실 및 연일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16조 (조사협조)

-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채권 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이에 응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이를 회사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7조 (이행장소, 준거법)

- ① 모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여신 취급창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 업무를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 창구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 창구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 18조 (약관, 부속약관변경)

- ①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약관과 아울러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부속약관이 적용됩니다.
- ② 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서 알리고, 그 밖에는 여신취급창구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 3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③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가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19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따른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여신취급창구가 속하는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안)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소개 및 구매 권유 (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 정보의 제 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 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 서울 서초대로 74길 14 (서초동) 또는 각 대출센터

○ 전화 : 1588-5114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시간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서면 : 서울시 서초대로 74길 14 (서초동) 또는 각 대출센터

○ 전화 : 1588-5114,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신청장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서초동) 또는 각 대출센터

○ 전화 : 1588-5114,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주)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3786-4000 인터넷 www.kisinfo.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1577-1006 인터넷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6000 인터넷 www.kcb4u.com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02-758-7669 / 서울시 서초대로 74길 14 (서초동)

○ 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 담당자

☎ 02-3702-8544 서울 중로 5길 68 (수송동, 코리아나 빌딩)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 담당자

☎ 02-3786-840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감원 신용정보실